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21. 12. 21.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 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표지)

1. 공사	나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기 간 :	착공 완공		월					
4. 계	약 금 액 :	일금	원건	8(₩)		
	공급가액 :일금 도무비 : 일금		정(₩ 정(₩)			
	부가가치세 : 변경전 계약금액	-		_))		
5. 지급	급재료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검부						
6. 지최	세상금률 : 계약금	액의 ()%						
- ス - ス	면이자율 연이자요율(대금 연이자요율(손해) 도급법령상 지급:	배상지연) :	연 ())%		지연이	자율이 .	우선 적	용
8. 하기	사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 :)%)			
9. 계약	냐이행보증금 : 계 일금	약금액의 ((₩)%)					
10. 하	도급대금 지급보 ² 일금 원		금액의 ()%					
11. 대	금의 지급								
계 [%]	선급금 약체결 후 ()일 발주자로부터 선 이내에 그 내용과	급금을 지급	·받은 날	-	- 도급겨) 약을 <i>></i>	세결한 '	날부터	15일

- 나. 기성금
- (1) 월 ()회
- (2) 공사목적물 인수일부터 ()일 이내
-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그 어음의 만기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 일부 적용함: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 2. 공사위탁 과업내용
- 3. 산출내역서
- 4. 비밀유지계약서
-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 6.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발주자"라 함은 소방시설의 시공(이하 "소방시설공사"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선급금"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약정한 완공일에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5. "하자"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용품을 시공하는 등 소방시설공사가 소방관계법 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6.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공사의 시공과 검사

제1절 공사의 시공과 조정

제4조(착공신고)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

- 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5조(공사시공)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이하 같다)및 공사공정예정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 ③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6조(원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소방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시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③ 원사업자는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7조(하도급계약통보) 원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수 있다.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 한다) 사본
-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3. 예정공정표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건설공사 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과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⑥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검사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때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조합하거나 시험을 한다.
- ⑧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완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 제9조(재료의 공급)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료의 인도 장소는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재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지 여부, 재료의 품명·수량·공급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료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공급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대하여 발생한 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써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재료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2. 원사업자가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료를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 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 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재료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 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가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원사업 자가 해당 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 제10조(재료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재료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 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재료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 중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후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료 중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후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재료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1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

- 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설비, 기구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9조 제9항을 준용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설비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 제12조(품질관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시공 내용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법령과 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공정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 담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및 공법, 주요자 재 등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 급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4조(추가・변경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다. 다만, 착공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대한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 · 변경공사의 내용
- 2. 공사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3. 공사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4. 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재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7. 기타 추가 · 변경공사와 관련된 사항
-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5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그밖에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 때
- 2.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 때
-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때
- 4. 그 밖에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없는 때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제공자가 부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제17조(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지)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중지에 따라 비용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상환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57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다.

제18조(감독원의 임명)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
 - 6. 이 계약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④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소방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소방기술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다.

제20조(근로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근로자 등을 배치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등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지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등이 공사의 시공이나 관리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원사업자가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근로자등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시 배치하지 아니한다.

제21조(현장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등) ① 수급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22조(일요일 공사 시행의 제한) ①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먼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시행을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시없이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완공검사)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24조(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의 안전 등

제25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한다.

-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원사업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 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26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27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은 책임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공사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29조(보험료의 지급 및 정산)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단,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관련법령 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2. 영업배상 책임보험
 - 3. 건설공사보험
-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절 공사목적물의 준공 및 검사

제30조(공사목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해당할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에게임금·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원사업자의 인수지체)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가 인도하

- 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2.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하다.
 - 3.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 가 부담한다.

제32조(검사의 방법·절차)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완공검사 증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이하 "완공검사증명서등" 이라 한다)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검사를 청구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등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합격의 통지시 원사업자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 의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한다.
-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잉여자 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33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목적물로 인해 생명, 신체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5조(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 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임치한 기술자료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임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가 부담한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공사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③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 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7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

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 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 1.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 정되도록 하는 행위
 -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 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 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

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9.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9조(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 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 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 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 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 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 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의 3퍼센트
-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③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위탁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40조의2(하도급대금의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한다.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을 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표준 연동 계약서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1.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의 명칭

- 2. 하도급대금 연동의 주요 원재료 또는 원재료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4.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준 지표 및 산식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첨】 표준 미연동 계약서로 하도급 대금 미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 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 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 ⑦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제4항에 따른 미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 제41조(그 밖의 사유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제39조 및 제4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공사 위탁내용・일정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하도급대금 지급

제42조(선급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한다.

-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

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 4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

제4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 급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 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사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 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한다.
- ⑥ 발주자는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⑦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 당한다.
- ⑧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 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 ⑦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는 【별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로 할 수 있다.

제45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수급사업자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수사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게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사업자에게 알려주고,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임금을 지 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급사업자(도급받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2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6조(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 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

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 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

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2. 자료의 주요 목차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47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8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개별약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0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 ②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며,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 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시공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 간 연장 등 계약체결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6.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③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시설공사관련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52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 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 2. 하도급대금
 - 3. 위탁일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 장 주소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3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frac{$$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선급금 $\times 4$ 공사기간(개월수)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공사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

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 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5.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보증기관
- ⑥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⑦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다.
 -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 3. 기존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 ③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 ⑤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55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사업자가 제33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제2항 및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④ 원사업자가 제34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34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34조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게 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1. 시공 규모(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수급사업자가 시공하거나 할 수 있었던 규모에서 실제 시공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시공 규모를 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 2. 시공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시공하거나 할 수 있었던 시공 규모에서 실제 시 공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시공할 수 없 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 ② 제3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제3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 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위험부담) ① 공사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중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② 공사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 ③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제57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 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3.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제17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5. 제16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6.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정이 아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 7.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 8.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 9.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 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58조(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로 하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재시공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 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 2.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 2년
 - 3. 그 밖의 소방시설: 1년
- ④ 수급사업자는 하자의 발생을 원사업자 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 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에게도 지체 없이 하자보수 사실 또는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했다 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중금)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하도급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완공검사 후 그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다음의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하도급대금(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5.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6.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7.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② 수급사업자가 제58조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 별로 완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완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

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소방시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 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 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 7.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 인 경우
 - 8.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 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 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대

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수급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9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사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 ⑨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3.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 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61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별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2	계 약 금	액	
	계 익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2	계 약 금	액	
	계 익	기	간	
	원사업자	상호 와 대	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 와 대	표자	
		주	소	

-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 에게 통보합니다.
- 5. 직불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 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재료" 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 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 4. "조정요건" 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 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 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5. "조정 주기" 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 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다.
-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

- 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 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원사업자등	수급시업자등
		기준시 점	비교시 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반영일	확인	확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 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

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